



안커성실서비스 (상해) 유한공사 VS 상해 천요우 과학기술 발전 유한공사 등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19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6) 沪高民三 (知) 终字第92号
판결 일자	2006년 11월 1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패)
원심원고(상소인)	안커성실서비스(상해)유한공사		
원심피고(피상소인)	1. 상해 천요우 과학기술 발전 유한공사, 2. 시양루오나이(상해) 국제무역유한공사, 3. 상해시 왕청 경제 발전 유한공사, 4. 상해시 건강교육협회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관련 경영정보		
키워드 (Keyword)	경영정보(经营信息), 데이터베이스(数据), 기밀표시(声明为机密), 사용개연성 추정원칙(使用盖然性推定原则), 입증책임(举证责任)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는 원심 피고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객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 데이터베이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상호비밀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원심 피고들은 원심 원고와 약정한 사항 이외에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고, 원고는 자신들의 경영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경영정보가 상업비밀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았으나, 원심 원고가 단 2개의 주소가 대응하는 가상 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며, 사용 개연성 추정원칙에 따라 원심 피고들이 데이터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여 상업비밀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원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원심 피고(피상소인)

상업비밀은 특정되었으며 구성요건 성립여부도 충분히 증명하였다.

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구성요건 성립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비밀보호계약은 2000년에 체결된 것이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2008년 실시된 노동계약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

1994년 노동법, 1996년 노동부의 기업직원의 이직에 관한 약간의 문제의 통지 제2조, 과학 기술인원의 이직에서 기술비밀 관리 강화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제6조, 제7조에 의해서도 보상이 필요한데, 위룡공사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04 판결 요지

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권리인의 상업비밀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소송의 상업비밀이 합법성을 가져야 한다. 합법성은 당사자가 기술정보 또는 경영정보를 취득, 사용함에 있어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본 사건 원심 원고의 관련 데이터정보는 국민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그 정보의 사용을 관련된 국민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 원고의 데이터 관련 상업비밀 침해 소송은 상업비밀의 합법성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원심 원고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05 Key Point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4조에서,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권리자는 ① 자신의 영업비밀이 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②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③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그 손해액수를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권리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이와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는 한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다르지 아니하다.

본 사건 판결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권리인의 영업비밀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소송의 영업비밀이 합법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국민 개인과 관련한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취득과 사용은 국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취득과 사용관련 정보의 합법적 근거를 입증해야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